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“한국보육진흥원”을 “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”으로 하고,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“한국보육진흥원”을 각각 “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	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
① 및 ② (생략)	① 및 ② (생략)
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,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 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 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 계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은 제외 한다)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 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 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	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 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 의 20 이하	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 의 20 이하
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 분의 15 이하	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 분의 15 이하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	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 0분의 10 이하	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 0분의 10 이하

제16조의3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<u>한국보육진흥원</u> 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.	제16조의3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 <u>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19조의2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지역별 보육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수를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② 및 ③ (생략)	② 및 ③ (현행과 같음)
[별표 1] ※ 비고 1. “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) ~ 2) (생략) 3) 법 제8조에 따른 <u>한국보육진흥원</u> 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	[별표 1] ※ 비고 1. ----- ----- -----. 가. ----- ----- 1) ~ 2) (현행과 같음) 3) ----- <u>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</u> 에서----- -----

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) (생 략) 나. ~ 자. (생 략) 2. “보육업무 경력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 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) ~ 2) (생 략) 3) 법 제8조에 따른 <u>한국보육진흥원</u>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) (생 략) 나. (생 략) 3. (생 략)	----- -----경력 4) (현행과 같음) 나. ~ 자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. 가. ----- ----- 1) ~ 2) (생 략) 3) ----- <u>한국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</u>에서 ----- ----- ----- 4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7228, 7212